▌이베로아메리카 제11권 1호[2009. 6] : 71~98

중남미법 연구실태와 중남미법 번역의 필요성

박 종 탁*
(Park, Chong-Tark)

<Abstract>

La Actualidad y Necesidad de Investigar y Traducir el Derecho Latinoamericano

Corea del Sur expande su comercio e inversión para con Latinoamérica, y más de cien mil coreanos residen actualmente en los países latinoamericanos. Al considerar tales relaciones estrechas y expandientes, se nota una grave falta de interés por el derecho latinoamericano, porque hasta hoy no se ha hecho en Corea casi ninguna traducción ni la investigación de ello. Es hora de poner interés en este campo, el cual ha de contribuir a dos grandes rasgos: primero, a acelerar actividades coreanas en Latinoamérica, disminuyendo riesgos o perjuicios bajo la protección del derecho, y segundo, a comprender la región mejor a través de su derecho. Lo bueno es que hay muchas similitudes jurídicas entre los países latinoamericanos porque comparten espacios culturales e históricos comunes. Al final de este ensayo se recalca la importancia de traducir las leyes de estos países y/o redactar un diccionario de té

* 부산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E-mail: parkct@pufs.ac.kr

rminos jurídicos español-coreano.

[Key Words: Derecho Latinoamericano/ Actualidad de Investigación/ Intereses Nacionales/ Comprensión de la Región/ Traducción del Derecho Latinoamericano]
[주제어: 중남미법/ 연구실태/ 국익/ 지역 이해/ 중남미법 번역]

Ⅰ. 들어가면서

법은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과 한계 및 그 행사의 절차를 정해놓고, 개인이나 집단 간에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준이며, 현대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법치주의를 지향한다. 따라서 한 나라의 법률 정보는 국가 및 개인 간의 관계에서 필수적인 지식이 될 수 밖에 없고, 그런 만큼 풍부한 법률 자료의 확보와 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중남미 33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그 중 18국가에 대사관을 설치하였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은 십만 명 이상이며, 624업체가 진출해 있다.[1] 교역규모는 갈수록 증대되어 올 해 들어 10월까지 우리나라의 대 중남미 수출액이 대 일본 수출액을 훌쩍 넘어섰을 뿐 아니라, 최근 매년 100억 불 이상의 무역흑자를 안겨주는 효자 시장이기도 하다.[2]

---

1) 외교통상부의 2006. 5월말 통계. http://www.mofat.go.kr

2) 무역정보네트워크(한국무역협회)의 무역통계에 의하면, 2007년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액은 257억불, 수입은 113억불이었으며, 2008년 1~10월 사이에는 수출 284억불, 수입 117억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대 일본 수출은 2007년 263억불, 2008년 1~10월 사이 242억불인 반면에, 수입은 2007년 562억불, 2008년 1~10월 사이 532억불로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중남미 지역의 법률 정보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게 마련이다. 전에는 이 방면의 연구가 불모지대와 다름없었고, 간혹 이런 저런 기관에서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에 대한 연구가 나왔을 뿐이지만[3], 최근에는 KOTRA(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가 무역 및 투자와 관련된 법규와 제도를 간추린 정보를 제공한다.[4]

그런데, 이러한 정보는 외국인투자법, 노동법, 관세법 등 몇몇 한정된 영역에 국한된다. 즉, 한 나라의 법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산물이 아니라, 특정 목적을 위해 필요한 사항만을 추출한 것이다. 실용적으로 쓸모 있는 정보임에는 틀림없으나, 해당 법의 전문이 제공되지 않아 근거가 불확실하며[5], 그 법의 취지나 다른 법률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힘들다. 또한, 법체계에 대한 근본을 이해함이 없이 지엽적인 것만을 밝히기 때문에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를 논하기보다는 단순한 조사 자료라고 하는 것이 맞을 듯하다. 이렇게 보면, 중남미의 법에 대해서는 기초 연구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응용에만 치중해온 셈이다.

다행히 한국외국어대학교는 2007년에 브라질 법학박사 출신 조희문

서 무역적자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http://www.kita.net

3) 박훤일, 「중남미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 협약 해설」(한국산업은행(1995.2), 『KDB 산업경제』, 28권, pp.31-63), 이경희(1996), 「아르헨티나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http://www.globalwindow.org 참고로, 법을 위주로 분석한 자료는 아니지만, 중남미에 관한 많은 자료를 다음의 기관이나 연구소 웹사이트를 통하여서도 얻을 수 있다: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 포럼(FEALAC), 한·중남미협회, 국가정보원,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 수출지원 센터,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서울대 스페인중남미연구소,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등등.

5) KOTRA의 자료가 자체의 풍부한 해외지사망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직접 분석한 것인지, 다른 나라의 자료를 번역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직접 분석한 자료라면 해당 법의 전문을 번역한 자료가 있을 듯하다.

교수를 영입하여 중남미 법 연구와 보급에 선도역할을 하고 있다. 즉, 동 법과대학에 '중남미법'과 'BRICs통상법'이 개설하였고, 동 국제지역대학원 중남미학과에서 '중남미사회와 법', BRICs연계전공에서는 '브라질기업과 통상' 과목에서 브라질 통상법과 투자법을 강의한다. 그리고 이제 갓 출범하였지만, 동 법학전문대학원에는 국제지역법조인의 양성을 목표로 중남미 법에 관해 4과목(중남미법, 중남미법 실무, 중남미 기업법, 중남미 지역통합법)이 개설되어 향후의 교육이 기대된다.

또한, 최근 중남미 법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의 학술회의가 2년 연속 개최되었다.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법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법제연구원이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및 동 대학 중남미지역원(구 이베로아메리카연구소)와 공동으로, '이베로아메리카 법의 과제와 전망'이란 주제로 2007년 11월과 2008년 11월 2회에 걸쳐 학술회의를 개최한 것이다.[6]

이러한 것들을 기회로 삼아, 우리나라에서 중남미 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중남미 법 연구의 필요성을 국익의 관점과 지역 이해의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비교법의 관점에서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아직 연구 역량이 축적되지 않아 따로 한 장을 떼어 다룰 수는 없고 위 두 관점에 일부 내용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남미 법 연구지원 및 결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려고 한다.

---

6) 발표된 주제는, '이베로아메리카 법의 과제와 전망'(기조연설/ 김우성), '이베로아메리카 법 문화에 대한 소고'(박종탁), '이베로아메리카 법제의 발전과 동향'(이세정), '라틴아메리카 여성법의 발전방향'(이순주) (이상 2007년 발표분으로서 『비교법학』 제 19집,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8. 2월에 논문 수록), '베네주엘라 신헌법에 관한 고찰'(박종탁), '멕시코 법학교육의 현황과 과제'(김우성), '칠레 법제의 발전과 동향'(이세정) (이상 2008년 발표분)이다.

Ⅱ. 국익의 관점에서

1. 주요국 법 및 중남미 법에 대한 연구 현황

앞에서 KOTRA의 자료가 무역 및 투자에 초점을 맞춘 조사 자료임을 지적했는데, 그것이야말로 국익을 염두에 둔 것만큼은 틀림없다. 그러나, 어떤 학문 분야든지 당장의 필요에만 급급하기보다는 기초연구에 투자를 해두어야 장기적으로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은 두 말 할 나위 없다. 특히 법에 대한 연구가 국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미국과의 관계를 실증적인 예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원래 우리나라 법학계에서 관심을 두어온 외국법은 일본의 영향을 받아 주로 독일법이었지만, 미국의 영향력이 우리의 정치·군사·경제·외교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되고, 우리의 경제개발과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따라 통상 마찰이 커지는 등 미국이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되자 미국 법에 대한 연구 또한 가장 왕성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한국에서의 미국 연구를 살펴보자면, 1954~1960년 사이 미국을 주제로 한 석사학위 논문 31편 중 법학 논문이 9편으로 29%를 차지한다. 1961~1970 사이엔 석사논문 55편 중 9편(16%), 1971~1980 사이 석사논문 82편 중 16편(19.5%), 같은 기간 박사논문 28편 중 4편(25%), 1981~1990 사이 석사논문 462편 중 80편(17.3%), 박사논문 87편 중 29편(33.3%)에 이른다.[7] 대검찰청의 해외연구자료를 보아도 미국 편중 현상이 두드러진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검사들이 해외 연수를 하고 작성한 연구보고서 95건 중의 54건(약 57%)은 미국에서 연수를 하고 미국 법을

7) 자료 출처: 김영철, 이순주(1996), "한국에서의 미국 연구" in 한국외대대학원 지역학연구회 편, 『지역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pp.289-316. 미국법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흔한 것인지는 인터넷상에서도 쉽게 확인된다.

중심으로 이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8]

근래에는 교역, 투자, 유학 등에서 제일의 대상국으로 급부상한 중국의 법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는 듯하다.[9] 우리나라 검사들의 해외연수에 있어서도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수효의 보고서(11건)가 제출되었다.[10]

중남미의 법 일반에 대한 연구는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등의 경우처럼 우리나라 법제 형성에 영향을 주어서라기보다는, 중국과의 경우처럼 우선적으로 교역 및 기타 국제관계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일 터인데, 이상할 정도로 중남미 지역의 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거의 아무런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승환(1996)의 국내 중남미 지역 연구의 분야별 추세 조사에 의하면[11], 1956년에서 1994년 사이 조사된 총 345편의

8) http://www.spo.go.kr 대검찰청 홈페이지의 해외연구자료. 참고로, 스페인어권 연수 실적은, 중남미 국가는 없고, 스페인에 두 명의 검사가 연수를 하면서 각각 스페인의 공인탐정제도(2007. 7), 스페인의 검찰조직과 검사의 권한(2006. 8)에 대해 조사보고를 하였다. 이외에도 해외연구자료 사이트에는 각국의 형사사건 및 형법 관련 자료(판례·통계·번역·기타)가 73건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중남미에 관한 것은 전무한 실정이다.

9)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일찍이 1992년에 『중국 민법통칙연구』를 낸 것이 있으며, 석수길(시간의 물레, 2005)과 노정환(삼성경제연구소, 2007)에 의해 중국 민법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중국 헌법, 형법, 상법 등에서부터 근로계약법, 관세법, 반독과점법 등등에 이르기까지 국내 연구 자료가 인터넷에서 상당수 검색되며, 관련 학회들도 눈에 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국 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비정상 철수 외자(外資)기업에 대해서 상대국과 체결한 민법 및 상법과 형법 사법공조조약에 의거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한다(동아일보 2008.12.22 A1,3면.)

10) http://www.spo.go.kr 대검찰청 홈페이지의 해외연구자료. 그 다음으로는 일본(6건), 독일·영국(각 5건), 캐나다(4건), 프랑스(3건), 스페인·오스트리아(각 2건), 호주·네덜란드·러시아(각 1건)의 순이다.

11) 남승환(1996), "중남미지역 연구의 현황과 과제" in 한국외대대학원 지역학연구회 편, 『지역학의 현황과 과제』, pp.317-346.

연구물(단행본, 일반논문, 학위논문 포함) 중에 정치 분야가 148편으로 약 43%를 차지하며, 경제에 대한 연구는 63편으로 18%에 지나지 않는데, 이는 국내의 중남미 연구가 주로 정치학과 현지 언어를 전공한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는 사실과 중남미 경제를 전공한 연구자가 극히 적은 현실에 기인한다.[12] 그밖에는 대외관계-역사-사회문화-기타 순으로 되어 있고 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중남미 지역연구를 선도하는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의 학회지(1988~2007)에 실린 논문을 분석해보아도 법 연구논문은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1990년대 이후 중남미와의 교역이 커짐에 따라, 중남미 경제를 연구하는 학자가 늘어나게 되고 경제 관련 논문이 정치 분야의 논문을 앞지르게 되었다. 2000~2007년 사이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에서 24권의 학회지를 발행하여 여기에 총 225편의 논문이 실렸는데, 그중 경제 분야가 57편(25.3%)으로서 정치 분야 44편(19.5%)보다 비중이 커진 것이다.[13]

서경석(2005)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해방 이후 2005년 3월까지 국내에서 발행된 스페인 및 중남미 관련 단행본은 총 2,164권에 달하는데, 문학(646권)-경제무역-문화사회-언어교육-정치-관광-어학-역사지리-과학기술(13권)-기타의 순이다. 경제 및 무역에 관한 책은 총 449권인데, 중남미라는

12) 앞의 글 338, 340쪽. 남승환은 나아가, 중남미 국가들의 유사성에 기초한 많은 이론들이 별다른 비판적 검토 없이 국내에 소개됨에 따라 우리 학계의 독자적인 분석 시각이 결여된 채 우리의 보편적 시각으로 고착화된 측면이 컸다고 지적한다(pp.344-345).

13) http://www.lasak.or.kr 나머지 논문의 편수는, 문학-사회문화-예술-원주민-한국관련-언어-종교-노동-혁명-환경-마약-역사 등의 순이다. 단, 학제간 연구가 늘어남에 따라 두 분야 이상에 걸쳐진 논문들이 다수 있어서 위의 분류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음을 밝혀둔다.

블록으로 다룬 것이 185권(41.2%)이며, 나라별로는 멕시코가 112권(24.9%)으로 단연 선두이고, 그 다음은 칠레 28권(6.2%)와 브라질(4.7%)의 순이다.[14]

대법원의 종합법률서비스[15]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중남미와 관련된 자료가 270건이 검색되는데, 이는 1962~2008 사이의 것으로서, 단행본 35권, 논문 182편, 평석 4편에 들어 있는 것으로서, 대체로 법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다루면서 중남미의 사례 및 중남미 법에 대해 언급을 한 것들이다. 가령, 황성연(2006)이 「과테말라 경제·노동환경과 노무관리 방향」[16]에서 간략한 조사를 한 것이라든가, 이철송(1998)이 「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법률문제」[17]를 다루면서 80년대 중반 중남미 국가들의 사례를 언급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이 연구물들은 원어자료를 토대로 전문적이고도 집중적으로 중남미 법을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중남미 법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긴 하다.

이상 열거한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중남미 법 관련 자료가 산발적으로 존재한다. 가령, 조희문 교수의 논문 「MERCOSUR과 법률공동체」(1999)[18], 저서 『브라질 IT 관련 법령판례 연구』(2005)[19] 등이 있다. 그 외에도 필자가 파악하지 못한 자료가 더 있을 수 있으나 그 건수는

14) 서경석(2005), 「스페인, 중남미 관련 국내 단행본 출간 추이 분석」(『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ume 18, Number 4, pp.217-235)
15) http://glaw.scourt.go.kr 각 대학 법학연구소, 각종 법률학회 및 연구회, 법 관련 신문 및 출판사, 각종 법 관련 기관의 자료를 망라하고 있다.
16) (월간)노동법률 186호, 2006. 11. pp.113-118.
17) 인권과 정의 266호, 1998. 10. pp.17-30.
18)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제 1호, pp.173-198.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19) 컴퓨터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 발간.

소량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2. 중남미 법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남미 법 연구는 거의 미개척 분야로 남아있는 실정이지만, 앞으로 중남미 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다음과 같이 국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중남미 법 자료 및 연구결과는 한국인의 중남미 진출 의욕을 높이게 될 것이다. KOTRA의 경제 관련 조사 자료와 함께 해당국의 법체계에 대한 이해는 개인과 기업에 철저한 사전지식을 갖고 임하게 함으로써 자신감을 높여 진출의욕을 북돋우고, 정착을 용이하게 하거나 사업성공률을 높일 것이다. 문화에 대한 이해와 언어 준비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법률은 경제활동에 있어 가장 확실한 근거를 지닌 지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20]

---

20) 주지하다시피 상당히 많은 한국기업이 중국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법률적인 검토 없이 무작정 투자 결정에 나서 기업 활동 초기부터 법률분쟁에 휘말린 사례가 부지기수이다. 또한 과거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관시(關係관계)'가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만 WTO 가입 이후 중국이 많이 달라져서 이제는 합법성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관시'를 활용하되 법이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부산일보 2005. 9. 22일자 26면 동아대 지식자원개발센터 이학춘 초빙교수 인터뷰기사 인용). 다반가지로 중남미에서 한국교민 혹은 사업가가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부패에 일조하거나, 현지사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문제를 일으키곤 한다. 일례로, 멕시코에서는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데, 1년 전에 어느 한국 기업인이 멕시코에 공장을 설립하고 현지 법에 대해 무지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게 막다가 고발을 당하여 곤욕을 치른 일이 있었다. (http://cafe.naver.com/tradingb2b/812 게시일 2008.05.22). 또한, 주 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과 아르헨티나 외무부의 한·아 관계 토론회에서 "한국 기업들이 아르헨티나에 직접 투자를 꺼리는 이유가 현지 노동법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점도 거론이 되었다"고 한다(김영길의 블로그 <남미 현장 뉴스>. 2005.05.03. http://cafe.chosun.com/baargentina). 아르헨티나

둘째, 중남미와의 인적·물적 교류가 갈수록 증대되는 때에 법 각종 분쟁 발생시 불이익이나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함이다. 상대 국가의 법을 알면 정당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부당한 피해를 입게 되거나, 혹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과다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때로는 불법을 저지르는 일도 흔히 발생한다.

셋째, 중남미 법의 번역 및 연구가 중남미에 거주하는 한인 교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중남미로의 이민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현재 10만 여명에 이르는 한인 이민이 중남미 여러 나라에 정착하여 살고 있다.[21]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게 되거나[22], 또는 생존의 몸부림으로 불법, 탈법, 변칙행위를 하는 일이 잦아 현지인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한국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23] 중남미가 아직도 부패가

에 진출하고자 하는 어느 회사는 아르헨티나의 노동법을 입수하고자 인터넷 카페에 자료를 구한다는 글을 올려놓았지만, KOTRA에 자료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적은 탓인지, 아니면 최근에서야 KOTRA 자료가 준비된 것인지, 오랫동안 답이 달리지 않는 것을 보았다(http://cafe.naver.com 게시일:2007.03.15).

21) 최초의 한인 이민은 구한말인 1905년 일천 여명이 멕시코의 에네껜 농장으로 떠난 것인데, 이들이 받은 비참한 처우는 영화 <애니깽>으로도 만들어져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당시 나라가 동포에게 아무런 보호의 손길도 뻗칠 수 없었던 것은 국운이 다하여 무너지던 때였으므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만큼 비참하게는 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1차로 브라질(1962년 92명)과 아르헨티나(1965년 78명), 파라과이(1965년 95명)로 농업 이민을 떠나보낼 때도 정부가 철저한 현지 사정 파악과 이민 선발, 그리고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하여 그 계획이민이 실패로 종결되고, 이들은 결국 대도시의 보따리 상인으로 대거 유입되었다. 서성철(2005), "멕시코 한인사회와 현지 적응" in 조돈문, 임상래, 이내영 편, 『세계화와 라틴아메리카의 이주와 이민』, 신자유주의시대 라틴아메리카 연구총서 제3권, 오름, p.176.

22) 서성철(2005), pp.192-193. 주로 문제가 되던 것이 노동법으로서 현지인을 고용한 후 근로환경, 초과근무, 최저임금, 노동조합, 해고 등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일이 잦았다.

심하고 비공식부문의 경제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FTA나 수입 규제, 법령의 완비 등을 통해 우리 교민 중 속칭 보따리 장사나 상표 도용, 밀수 등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24] 한인들이 대체로 경제적 가치만을 지나치게 추구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현지인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들 중 아직 상당수를 점하는 이민 1세대가 스페인어 혹은 브라질어의 해독 능력이 낮은 편이어서 국문으로 번역하여 현지의 법을 보급한다면 준법정신도 높아지고 모국에 대해 다소나마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25]

넷째, 우리나라에서 로스쿨을 출범시키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갈수록 긴밀해지는 글로벌 경제체제 및 모든 분야가 활발하게 교류하는 세계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인데, 나라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역사·언어·문화적으로 공통점이 많아서 한 나라에 대한 연구가 역내의 다른 여러 나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남미 지역의 법에 대한 연구는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데 요긴하게 쓰일 것이다.

다섯째, 중남미 법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우리나라 법학계의 비교법 연구의 지평이 확장되고 활성화되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화 시대를 맞은 오늘날 비교법의 역할이 크게 주목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

23) 앞의 글 p.184, pp.226-227.

24) 앞의 글 p.192.

25) 해외교민이 한국정부나 대사관 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편인데, 멕시코 교민의 경우에도 다찬가지이다.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사관의 대동포업무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답이 60.8%, 반면에 아주 열성적이었다는 답은 0.2%에 지나지 않고, 한국정부나 사회단체가 재멕시코 한인사회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가에 대해, 보통 이하라는 답이 55.3%, 무관심하다는 답이 44.5%였다고 한다(서성철 2005, 191).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옹호와 자유 시장경제 질서를 지향하여 하나의 시장에 하나의 법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통일법과 지역공동체의 결성이 촉진되고 있으며, 고도로 발달한 정보기술사회가 당면한 경제, 사회, 환경 문제는 당사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인접국의 문제이며 동시에 지역적 또는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적 또는 국제적인 상호협력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26] 다른 한편, 중남미 법만을 떼어서 보자면, 중남미 법은 보통 로마법에 뿌리를 두고 프랑스 법제에 상당히 영향을 받은 유럽 대륙법계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따로 떼어 고찰할 만한 가치가 충분이 있다. 영국 법, 미국 법, 호주 법이 근본적으로는 같은 앵글로색슨법계에 속할지라도 서로 간에 차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27] 그렇지만 현재까지 국내의 비교법 연구는 주로 미국·독일·프랑스·영국·중국 등 몇몇 주요 외국법 연구에 편중되어 있었고[28], 비교법 연구기관도 많지 않은 가운데 실질적인 활동성과도 미약한 편이다.[29] 앞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이유로 장차 중남미 법에 대한 비교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법학계의 세계화가 큰 폭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

26) 조규창(2005), 『비교법』상, 소화, 머리말 vi-vii에서 요약 발췌함.

27) Ignacio Aymerich Ojea(2004), 「XIII. Derecho Latinoamericano」(『Lecciones de Derecho Comparado』, Manuel Guillermo Altava Lavall(coord.), Univers Jaume I, Castellon de la Plana, Spai, pp.381-382)

28) 국내에서 출간된 비교법 서적이 현재까지 몇 권에 지나지 않는 정도이고, 세계의 주요법계로 영미법과 대륙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기타 사회주의 법·이슬람 법·힌두 법·동남아시아 법·아프리카 관습법 등을 다루는데, 기타 편은 서양 서적을 간추려 번역한 것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박홍규(1993), 『비교법-법을 통한 세계여행』, 이론과실천, 강경선·전원배(2003),『비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조규창(2007), 『비교법』상·하, 소화 등을 참조 바람.

29) 한국법제연구원 내에 비교법제 연구센터를 두고 미국을 비롯한 8개국에 조사원을 두어 활동하게 하고 있으나 중남미에는 전무하며, 대학에는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부산외대 비교법연구소, 한국외대 및 동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연구소 산하에 비교법연구센터가 설치된 정도이다.

마지막으로, 중남미 법에 대한 연구는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가 진전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중남미 국가들은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 있고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나라들로 여겨지곤 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온 것도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식민통치를 경험했고, 주변 자본주의 혹은 반주변 자본주의권에 속한 가운데,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부패가 심하고, 사회가 양극화되어 있다는 등의 특징은 어느 정도 같기 때문에, 통치자는 중남미의 독재기법을 벤치마킹하고 이른바 운동권이라 불리던 진보세력은 중남미의 종속이론, 해방신학,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론 등을 수입해왔으며, 지금도 걸핏하면 우리나라와 중남미를 비교하는 경우가 잦은 것이다. 물론 중남미의 혼돈상이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기 때문에 "이러다가 남미처럼 될라"라는 우려의 소리를 많이 듣는 것이지만, 법 앞의 평등이니, 법치국가니 하는 말이 확실히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현실에서 어쩌면 현재 중남미 법의 낮은 효율성과 신뢰도가 우리나라 법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역설적으로, 중남미가 우리보다 어지러운 사회인만큼 정치·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더 절실히 깨닫고 있어서, 향후 중남미의 개선된 법제도가 우리나라 법의 낮은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좋은 모델이 될지 모른다.

Ⅲ. 지역이해의 지평확대라는 관점에서

국제관계를 맺고 있는 외국의 법 연구는 국익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 혹은 지역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지역학 연구는 언어를 토대로 하여 역사·문화·어문학·정치·경제·사회·과학 등을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데[30], 할 수만 있다면 법에 대한 연구를 포함해야 그 지역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가 완성

될 것이라 판단된다. 정의가 지켜지는가, 사회의 합목적성과 법적 안정성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가가 그 사회의 발전 정도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중남미 지역의 국가들의 법을 연구하는데 있어 다행스러운 점은 이들 국가들이 역사문화언어적 공통점을 지니며, 그리하여 법규 및 법제도, 법문화 상의 유사성 또한 크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역내의 많은 국가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연구의 효용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개별 국가의 법에 대한 연구가 생략될 수는 없으나, 여기에서는 일단 중남미라는 지역을 포괄적으로 다룬다는 것을 밝혀두고자 한다.

우리 사회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자조적인 말이 나돌듯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칠레 시인 파블로 네루다는 "대도(大盜)는 법이 보호하고, 빵 한 조각을 훔친 자는 감옥이 보호한다"(El fuero para el gran ladrón, la cárcel para el que roba un pan.)라고 꼬집은 바 있다.[31] '라틴바로미터'의 2005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중남미인들은 <법 앞에 평등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71%가 '전혀/거의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으며, 준법정신에 대한 질문에는 평균 20%만 지키는 편이라고 하고, 사법 권력에 대한 신뢰도에 있어서는 평균 31%에 그치는 실정이다.[32]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법이 중남미의 질서유지의 보루나, 발전의 토대가 되어주지

30) 박용구(1996), "지역학의 대상과 방법(론)" in 한국외대대학원 지역학연구회 편, 『지역학의 현황과 과제』, pp.16-18.

31) 박종탁(2008), 「이베로아메리카 법 문화에 대한 소고」 114쪽에서 재인용.

32) Informe Latinobarometro 2005 http://www.latinobarometro.org 통계는 스페인어권 17국과 포르트갈어를 쓰는 브라질, 도합 18개 중남미국에 대한 조사결과를 평균으로 낸 것이며, 나라에 따라 수치에 차이가 난다. 박종탁(2008)의 「이베로아메리카 법...」 참조 바람.

못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 있는 중남미의 법 문화는 다음 몇 가지로 특징지어진다. 지역적 특성과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기보다 이상적이기만한 법을 만드는 전통, 법을 존중하지만 지키지 않는 사회적 관행,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현실, 시민들로부터는 불신을 받아도 직업으로서는 선호되는 법률가 등이 그것이다.[33]

중남미 법이 왜 이렇게 불신을 받을까. 그 이유를 제대로 알려면 역사 속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콜롬비아의 라틴아메리카 대안법률서비스 연구소에서는 2003년에 <중남미의 법과 사회: 법 비평연구에 대한 토론>이라는 서면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는 Mauricio Garcia Villegas와 Cesar A. Rodriguez가 맡고, 그에 대해 11명의 법학자가 다양한 관점에서 비판하는 형식을 취하였다.[34] 발제 논문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중남미인의 법에 대한 태도는 이중적이다.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선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하지만, 공식 법률의 권위를 부정하는 정서가 만연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법이 민중을 지배하는 도구로 쓰이기 때문에 저항하지만, 다른 한편 법이 사회를 해방시키는 미래적 처방이 될 것을 염원한다. 법이 불신의 대상이 되는 것은 깊은 역사적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스페인 왕은 아메리카에 식민화를 통해 유럽의 제도와 문화를 이식함으로써 사회·문화·법제도적 근대화를 이루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의 문화·제도와 충돌을 일으켰고, 영토의 광활함, 주민의 문

33) 박종탁(2008), 「이베로아메리카 법...」 117쪽에서 재인용.

34) Mauricio García Villegas, César A. Rodríguez(2003), 「Derecho y sociedad en América Latina: propuesta para la consolidación de los estudios jurídicos críticos」(『Derecho y sociedad en América Latina: un debate sobre los estudios jurídicos críticos』, Mauricio García Villegas, César A. Rodríguez(eds.), Instituto Latinoamericano de Servicios Legales Alternativos, Bogotá, Colombia, pp.15-66.)

화적 다양성, 경제자원의 부족과 사회적 양극화로 인하여 스페인에서 법을 만든 의도대로 해석되고 적용되는 일이 드물었다. 그리하여 통일되고 일관된 규범을 적용하기보다는 복수적 기준을 갖고 융통성 있게 처리하는 관행이 생겨났다.

독립 후에도 각 지역의 자생적 기준과 국가의 보편적 규범이 혼재하였고, 여러 분야에서 생겨난 규범들이 혼합·혼동·상호재생산 됨으로써 복수적 법의 기준은 중남미 법의 큰 특징이 되었다. 그러면서도 법제도가 불신의 대상이 된 것은 식민지 시대와 마찬가지로 법의 일차적 목적이 징세였기 때문이고, 덧붙여 징병의 의무까지 부과하였기 때문이다.

권력의 전횡 역시 타파되지 않았다. 중남미가 정치적으로 독립은 하였지만 완전한 독립이라기보다는 지배계층의 교체에 그친 것이었고, 정치·행정 경험이 없는 지역 엘리트 끄리오요는 프랑스 혁명정신과 미국의 독립헌법을 정치조직의 모델로 삼았다. 미국의 경우처럼 강력한 대의민주제도를 세우지 못한 채, 독립의 선구자들은 계몽전제군주처럼 법을 국가와 사회 건설의 도구로 이용하여 평등주의와 통일적인 국가문화를 만들어내려고 서둘렀다. 경제적 후진성·문화적 낙후·민중의 정치력 결핍 때문에 권위주의를 행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여겼다. 그리하여 민중으로부터는 거부감을 사고, 정치세력 사이엔 모든 정치 토의가 헌법에 집중되는 현상 및, 정치와 법이 공서(共棲)하게 되는 전통이 생겨났고, 오늘날에도 중남미에는 헌법 개정을 통해 대의 민주제의 결함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이어진다.

또한, 식민지 시대 법제도와 법이 상당 부분 존속되었고, 법 적용에 있어서도 사회적 관행은 변하지 않았다. 즉, 스페인으로부터 물려받은 로마법을 따르는 사법제도 위에 프랑스 혁명과 미국독립의 이상을 얹어 놓았지만, 사회·정치 현실을 바꿀 능력과 영향력은 갖추지 못했다. 새

로운 법이 사회조직에 스며들지 못하여 경제·정치·사법·문화적 변혁 시도는 불발에 그치고 말았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남미는 독립 후에도 식민지 시대처럼 법의 통일성보다는 복수성(법의 잣대가 여럿임), 준법정신보다는 권위주의적 규범에 대한 불복종 현상, 사회적 효율성보다는 권력 및 제도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법을 제정하고 개폐함에 따라 법의 무용론이 대두되곤 한다. "법은 존중하지만 지키지는 않는다(Se acata pero no se cumple)"느니, "법은 촌놈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El derecho es para los de ruana)"느니, "법은 곧 함정이다(Hecha la ley, hecha la trampa)" 등의 말은 오늘날 중남미인이 법을 대하는 아비투스를 형성한다.[35]

이처럼 중남미의 법이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지 못하고 사회적 낙후성만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황이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로 Fernando Carrillo Flórez[36]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십여 년 전부터 <거버넌스[37]와 사법제도 개혁>이란 주제를 강조하는 바, 관심을 가질 만한 대목이 많아 내용을 간추려 아래에 소개하고자 한다.[38]

---

35) 앞의 글 19~33쪽 요약.

36) 콜롬비아의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워싱턴 소재 미주간 개발은행(Banco Interamericano de Desarrollo)의 국가 및 시민사회 부문의 수석자문역을 맡고 있음.

37) Carrillo Flórez가 사용하는 스페인어 'gobernabilidad'는 전통적인 국가 주도의 통치 개념에서 벗어나 사회 전체의 유기적 관리를 강조하는 영어 'governance'에 대한 역어로 보인다.

38) Fernando Carrillo Flórez(1998/2007), 「La gobernabilidad y la reforma de los sistemas de justicia」.
Banco Interamericano de Desarrollo Washington, D.C, .Departamento de Desarrollo Sostenible, División de Estado, Gobernabilidad y Sociedad Civil, Revista Jurídica del Perú, Abril-junio de 1998.

1980년대와 90년대에 급부상한 거버넌스란 개념은 통치가 정부가 주도하는 것 이상의 사회적 기능임을 알려준다. 이것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합법성을 투입하고, 효과적인 정치를 통해 효과적으로 성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남미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민주주의의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선거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전부가 아니다. 전에는 경제성장을 위해선 권위주의가 필요하다고 여겼다. 강력한 정부가 발전을 이끌고, 테크노크라트가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베를린 장벽은 무너지고 정치적 글로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피노체트의 재판이나 조직범죄의 재판을 통해 지역재판이 글로벌화가 되는 시대다. 그러나 글로벌 법이 국가의 법을 대체하지 못한다. 국가의 법과 연합 혹은 보완할 뿐이다.

소외의 글로벌화가 문제이다. 경제성장은 느리고 효과는 어디론가 사라진다. 2006년 현재, 중남미 18국 중 8국의 시민은 평균적으로 1980년보다 가난해졌다. 불평등은 여전하고 실업과 치안은 악화되었으며, 부패 역시 더욱 심해졌다.

새로운 합의와 새로운 주체들이 등장하였다. 좌파·우파의 분류는 낡은 것이 되었다. 이제는 민주적 법치국가 속에 사회주의적 시장경제가 우세하다. 전에는 주권을 얘기했지만 현재는 민권의 시대다. 권리와 의무의 세계화된 함성이 들린다. 국가는 기본책무 수행에 충실하라. 민주적 거버넌스는 보다 합리적인 권력이다.

---

http://www.iadb.org/sds/doc/sgc-Doc46-S.pdf 및,
IV Encuentro Nacional del Consejo Superiosr de la Judicatura, Cartagena, 26 Oct 2007
http://www.ramajudicial.gov.co/csj_portal/assets/Intervencion%20Suddirector %20BID%20en%20Cartagena..ppt

중남미인 대부분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중도파이다. 중도파의 표가 좌파에서 정부를 선택한다. 오르테가와 룰라는 그를 선택한 중도성향의 유권자들 때문에 좌파로 편향될 수 없다. 현재 중요한 것은 공공정책과 그 콘텐츠이다. 민주주의의 입장에서 불평등과 싸우는 역사적 기회를 맞고 있다.

민주적 거버넌스는 인권의 보호와 보장을 향해 날기 위해, 국가의 제도적 능력의 향상으로 오른쪽 날개를 삼고, 참여성·투명성·공개성·책임성을 왼쪽 날개로 삼는다.

민주적 거버넌스는 권력의 제한이면서 합리화이다. 새로운 사회 내부적 주체들이 등장하여 국가 부문, 초국가기구와 함께 새로운 규범 하에 권력을 재편성한다. 일부 사람들은 '주머니' 의회, 말 잘 듣는 판사, 무책임한 정당, 취약한 시민사회, 눈에 보이지 않는 통제기구를 그리워한다. 그러나 아직 민주적 제도와 절차는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다.

사법개혁은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이다. 그것은 슈퍼마켓에서 진열하는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판사의 기본책무이나 판사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정의는 판사가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법개혁은 정치적 조정과 지도가 요구된다. 법의 미세조정보다는 거시적 개혁이 필요하다. 지난 20년간 노력했으나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개혁의 성공을 보장하는 모델은 없다. 따라서 수입품은 소용없다.

사법개혁은 국가개혁 과제 중 가장 정치적인 문제이며, 국가개혁 전략의 핵심요소이다. 실질적으로 가장 큰 사회적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사회 발전과 통합을 위한 열쇠다. 사법 접근권은 기회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다. 개혁은 지역권력, 지방분권, 비공식 부문과 연관되어 있다.

법 앞에 평등한가에 대해 중남미인은 1996년에 73%, 2005년에 71%가

아니라고 답했다. 평등하다는 답은 2005년 26%였다. 국별로는, 우루과이 47%, 베네수엘라 46%로 평등하다는 답이 많았고, 아르헨티나 18%, 에콰도르가 13%로 가장 적었다. 시민의 준법정신은 2005년 설문조사 결과, 100점 만점에 중남미 평균이 20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국별로는 우루과이 45점, 베네수엘라 37점으로 높았고, 파라과이 10%, 페루 7%로 매우 낮았다.

사법제도는 정치제도의 기능을 반영한다. 법 앞에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음은 법치국가의 정당성을 훼손한다. 신뢰도가 높고 접근이 용이한 법제도는 정치제도가 안정되고 강력한 곳에 있다. 법과 사법제도의 개혁 시도가 결실을 맺으려면 반드시 정치개혁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즉각적인 선거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일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사법제도의 독립성과 권위가 커지면 정치인이 갖는 재량권이 축소된다.

사법제도의 개혁이 갖는 사회적 함의는 무엇인가. 공정하고 접근이 용이한 사법제도 없이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성장도 없다. 사법제도는 그동안 선별적·배타적·차별적이었다.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은 사회 전 부문에 걸쳐 매우 높고,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빈곤층에겐 더욱 높다.

빈곤층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들이 많음은 병리적이다. 대출을 받을 수도, 개인소유도, 공식 부문에 종사할 수도 없다. 부자들에겐 민법, 가난뱅이에겐 형법이 적용되는 세상이다. 중남미에선 검사의 권한은 강화되어 왔으나, 공공변호제는 강화되지 않았다. 변호사의 조력이 없어 선고 없이 형을 사는 사람들로 감옥은 넘쳐난다. 시민은 변호사에게 자신의 권리 보호를 독점적으로 맡겨왔지만, 그 보호는 보류된 상태이다. 시민의 권리와 보장은 재판에서도 인정되어야 한다.

거주지·젠더·인종·사회경제적 상태 등으로 인해 소외된 주민은 '안 보이는 자이자 별 볼일 없는 자'로서 권리마저 배제되어 있는가. 모든 시민이 관계당국 앞에 합리적 비용으로 접근이 용이한 소송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2005년 조사에서 우루과이 51점, 코스타리카 46점으로 높은 편이었고, 에콰도르 16점, 니카라과 15점으로 가장 낮았다. 브라질은 41점, 칠레와 멕시코는 27점, 아르헨티나는 26점이었다.

인구 대다수에게 접근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신뢰도가 낮고 불공정한 사법제도는 민주화되어야 한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의 증가를 막을 조치가 필요하며, 효과적인 재판이 요청된다. 헌법소원에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회적 권리 소송은 진정한 권리 혁명이다. 빈곤층 후원 활동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법 절차가 근대화되어 사법 접근성이 쉬워지고 비용은 감소되어야 한다. 형법뿐만 아니라 민사·농업·가족·노동·주거 등에 이르기까지 법규가 간소화되어야 한다. 시민의 권리 교육과 훈련을 위한 출장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사법제도·법원이용절차·분쟁의 대안적 해결·시민사회단체 등과 관련된 기초 사회교육 및 법률 교육이 진흥되어야 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지원이 필요하다.

지역 단위 및 마을 경찰이 운영되려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치안경찰의 도입은 아직 초기단계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민관제휴 전략이 필요하다.

시민사회단체는 정치·사회적 권리를 회복하는 좋은 도구로서 실질적 변화를 추동할 중요한 외부 비판 주체이다. 아직은 배아 단계로 취약하다. 때때로 시민사회단체가 소외된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지 않고 일부 엘리트층에게 봉사하는 경우도 있다. 감독 및 회계보고 장치가 필요하

다.

시민사회 일반과 특별히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법과 사법제도가 유용한 도구라는 사실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 법리 논쟁이 기술적이어서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사법제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비공식 기구의 능력이 강화되어야 사법제도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대개의 개혁안은 사법제도를 통하거나 사법제도로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개혁이다. 이런 개혁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듯하나 실제로는 소수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 권리에 대한 교육은 법 적용에 그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권리의 주체임을 깊이 인식하고 권리를 배제 당하지 않도록 힘을 갖추어야 한다.

헌법이 권리의 보편성을 선포함은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실현을 위해 투쟁할 정치적·도덕적 정당성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어떤 사상가,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 관료도 역사에 이정표를 세우는 변화를 직접 만들어 낸 적이 없다. 이런 변화는 여기저기 흩어진 수천, 수만의 사람들의 리더십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들의 헌신과 능력은 비전, 방향감각, 동원, 갈등과 타협을 이끌어낸다. 그리고 그를 통해 새로운 가치와 능력이 학습이 이루어진다." -옥따비오 빠스

Ⅳ. 대상, 지원, 결과 활용[39]

39) 순전히 필자의 개인적 구상 및 제안일 뿐이며, 누구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번역 및 연구 자료가 국가 데이터베이스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때 가급적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겠다.

1. 연구 및 번역 대상

연구 대상을 중남미라는 지역단위로 법을 논하는 것과 개별 국가단위로 법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중남미라는 지역단위로 법을 논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사성과 공통점이 많기 때문인데, 중남미 법의 공통점을 다룬 해외 논문은 무척 많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없으므로 우선 해외 연구결과를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중남미 법에 대한 특징을 파악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개별 국가를 선택할 때, 중남미의 나라 수가 많으므로 국가의 규모와 지역에서의 영향력, 한국과의 교역 관계 및 한인교민의 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게 좋을 것이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이 일차적 연구대상국으로 적당할 것이나, 구체적 필요에 따라 어느 나라를 선택하든 상관없다.

나라를 정하고 나면, 헌법에서부터 시작하여 민법, 형법, 상법, 노동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등을 섭렵하고, 필요에 따라 환경법이나 관세법 등 세부적인 법을 연구하는 것이 순서일 듯하다. 번역은 어느 정도 그 나라의 법체계가 파악이 되고 용어에 익숙해진 후에 착수함이 좋을 듯하다. 번역자가 동시에 여럿인 것을 알 수 있다면 정보 교환과 번역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번역자 간에 자발적인 만남과 교류가 긴요하겠다. 가능하다면 그 전에 스페인어권 법률용어사전을 우선 번역하고 국내 법학자 혹은 비교법 전문가의 감수를 거쳐 누구나 온라인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인쇄 출판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연구 논문보다 중요한 것이 번역이라고 하겠는데, 믿을만한 번역이 제공된다면 중남미 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연구자가 늘어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언어적 제약 때문에 중남미 법을 연구하고 싶어도 못하던 국내 법학자를 초대할 수 있다면 중남

미 법 연구가 비로소 활성화될 것이다.

가독성이 높고 믿을 만한 중남미 법 번역이 이루어지려면,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에 능통한 국내학자가 법학에 대해 소양을 갖추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이다. 중남미 현지에서 법학을 전공한 국내학자 혹은 교민 1세로서 언어에 소질이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아니면, 팀 번역을 꾀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가령, 국내 중남미 언어 전공자와 현지에서 법학을 공부한 교민 1세 내지 1.5세, 혹은 2세가 호흡을 맞추고[40], 여기에 국내 법학자가 자문과 감수를 맡는다면 보다 완벽한 번역을 기할 수 있을 듯하다.

2. 번역 지원

중남미 법이 뭇 연구자의 관심을 끌 정도가 되려면 신뢰할 만한 번역이 어느 정도 체계적·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학술진흥재단이나 다른 기관의 특별 프로젝트로 선정이 되어 동시다발적으로 번역팀이 여럿 꾸려져 다년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결과 활용

지원기관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번역된 법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40) 임상래 외 5인(2006)의 「중남미 한인 실태 조사: 전문가 그룹 중심으로」(2005년도 재외동포재단 지원 연구)에 의하면, 중남미 4국(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라과이)한국정부의 재외동포 전문인력제도를 통한 피초청시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혔는데, 한국사회 기여의 기회가 주어지기만 한다면 다방면에 걸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을 듯하다. 조사에 응한 143명의 전문직 종사자 중 법조인은 18명이었다. 이들 중 이민 1세는 대략 3명, 1.5세는 5명, 2세는 10명 정도로 파악된다. 위 연구 71-78, 97쪽. 이들과는 별도로, 법조계에 종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한인 2세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조: http://www.korean.net/okf/new/main/index.jsp

한다. 다만, 자료의 성격상 일반에게 제한 없이 공개되어 많은 사람이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외교통상부 웹사이트의 법률자료실에 탑재시 이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Ⅴ. 나오면서

중남미와의 교역과 투자가 늘어나는 덕분에 관세제도나 노동법 등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추출한 자료를 구하는 것은 이제 어렵지 않게 되었으나, 그 조사 자료들이 학문적 연구결과는 아니라고 보인다. 우리나라에 스페인어가 소개된 역사가 짧고, 연구자가 많지 않으며, 전공은 주로 어문학에 치우친 가운데, 일부 정치학, 경제학, 역사학이 있는 정도여서 중남미 법학에 관한 연구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한 사회 내에서나 국제관계에서나 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세계화시대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중남미 법 연구와 번역의 필요성을 국익적 관점과 지역이해의 지평확대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어서 그 연구 및 번역 대상의 설정과 지원, 결과 활용에 대해 간단하게 의견을 제시하였다. 비교법적인 관점에서의 고찰은 부족하기 짝이 없으나 이것은 필자 및 다른 연구자들이 장차 해소해나가야 할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앞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나, 학문적인 목적으로나 중남미 법 연구가 활성화되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강경선·전원배(2003), 『비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목차.

김영철, 이순주(1996), “한국에서의 미국 연구” in 한국외대대학원 지역학연구회 편, 『지역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pp.289-316.

남승환(1996), “중남미지역 연구의 현황과 과제” in 한국외대대학원 지역학연구회 편, 『지역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pp.317-346.

박용구(1996), “지역학의 대상과 방법(론)” in 한국외대대학원 지역학연구회 편, 『지역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pp.15-33.

박종탁(2008), 「이베로아메리카 법 문화에 대한 소고」, 비교법학 제19집,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pp.105-123.

박홍규(1993), 『비교법-법을 통한 세계여행』, 이론과실천, 목차.

박훤일(1995), 「중남미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 협약 해설」, KDB 산업경제, 제28권, 한국산업은행, pp.31-63.

서경석(2005), 「스페인, 중남미 관련 국내 단행본 출간 추이 분석」,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ume 18 Number 4, pp.217-235.

서성철(2005), “멕시코 한인사회와 현지 적응”, “아르헨티나 한인사회와 현지 적응” in 조돈문·임상래·이내영 편, 신자유주의시대 라틴아메리카 연구총서 제3권, 『세계화와 라틴아메리카의 이주와 이민』, 오름, pp.173-203, pp.205-238.

이경희(1996), 「아르헨티나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임상래 외 5인(2006), 「중남미 한인 실태 조사: 전문가 그룹 중심으로」, 2005년도 재외동포재단 지원 연구.

조규창(2007), 『비교법』 상·하, 소화, 머리말과 목차.

부산일보 2005. 9. 22일자 26면 동아대 지식자원개발센터 이학춘조동제 교수 인터뷰

동아일보 2008.12.22 A1, 3면 <중 무단철수 외국기업 강경조치>

García Villegas, Mauricio, A. Rodríguez, César(2003), "Derecho y sociedad en América Latina: propuesta para la consolidación de los estudios jurídicos críticos" in Mauricio García Villegas, César A. Rodríguez (eds.), *Derecho y sociedad en América Latina: un debate sobre los estudios jurídicos críticos*, Instituto Latinoamericano de Servicios Legales Alternativos, Bogotá, Colombia, pp.15-66.

Aymerich Ojea, Ignacio(2004), 「XIII. Derecho Latinoamericano」 in 『Lecciones de Derecho Comparado』, Manuel Guillermo Altava Lavall(coord.), Universitat Jaume I, Castellon de la Plana, Spain. pp.381-382.

Carrillo Flórez, Fernando(1998), 「La gobernabilidad y la reforma de los sistemas de justicia」, Banco Interamericano de Desarrollo Washington, D.C., Departamento de Desarrollo Sostenible, División de Estado, Gobernabilidad y Sociedad Civil, Revista Jurídica del Perú, Abril-junio de 1998.
http://www.iadb.org/sds/doc/sgc-Doc46-S.pdf

Carrillo Flórez, Fernando(2007), 「La gobernabilidad y la reforma de los sistemas de justicia」, IV Encuentro Nacional del Consejo Superior de la Judicatura, Cartagena, 26 Oct. 2007.
http://www.ramajudicial.gov.co/csj_portal/IntervencionSuddirector/Cartagena..ppt Informe Latinobarometro 2005

http://www.latinobarometro.org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http://www.lasak.or.kr
http://cafe.naver.com/tradingb2b/812 (2008.05.22)
http://cafe.naver.com (2007.03.15)
외교통상부의 2006. 5월말 통계. http://www.mofat.go.kr
무역정보네트워크(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KOTRA http://www.globalwindow.org
재외동포재단 http://www.korean.net/okf/new/main/index.jsp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 http://glaw.scourt.go.kr
대검찰청 해외연구자료 http://www.spo.go.kr

▌논문투고일자: 2009년 4월 30일
▌심사완료일자: 2009년 6월 1일

▌게재확정일자: 2009년 6월 22일